仲裁硏究, 第 18 卷 第 1 號
2008년 3월 2일 발행, pp.3-30

논문접수일 2008. 1. 31
게재확정일 2008. 2. 25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he Effici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이 강 빈**
Kang-Bin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ADR사건 현황
Ⅲ. 조정인 (알선인) 및 중재인의 자격제도
Ⅳ. 주요 중재관련기관의 ADR 교육프로그램
Ⅴ. ADR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Ⅵ. 결 론

주제어 : ADR, 알선인, 조정인, 중재인, 회원등급, 자격제도, 검정제도,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연수규정

* 이 논문은 2007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Ⅰ. 서 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분쟁해결제도" 라고 불리워지며, 사인간의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ADR의 종류는 분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 및 중재가 ADR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ADR제도의 특징이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사인인 제3자에게 맡기는데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제3자인 조정인 및 중재인은 ADR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ADR은 절차에 관한 사항의 상당부분이 조정인 및 중재인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조정 및 중재절차의 전개가 조정인 및 중재인의 역할에 크게 좌우된다.

ADR제도의 발전여부는 ADR의 기능 즉 장점인 신속성과 경제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는 바, 이러한 ADR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조정인 및 중재인에 의한 효율적인 조정 및 중재절차의 진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인 및 중재인이 조정 및 중재절차의 지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조정인 및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적 행동 규범으로서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은 중재인이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재인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고 변호사 기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

2007년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는 총 320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중재사건 접수는 261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국제중재사건 접수는 59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한편 알선사건 접수는 총 552건으로 전년대비 3% 증가 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알선사건 접수는 337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국제알선사건 접수는 215건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은 총 978명으로 국내거주인 895명, 해외거주인 83명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실시하는 ADR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중재CEO 아카데미과정,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분쟁예방강좌 등이 있으며, 대한중재인협회가 실시하는 ADR 연수프로그램으로는 전문중재인 포럼, 중재인연수 기획사업, 신규중재인 교육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의 중재 및 알선사건 취급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수도 978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ADR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ADR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조정인 및 중재인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조

정인 및 중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정인 및 중재인들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ADR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DR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 중재관련기관 즉 영국공인중재인협회(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일본중재인협회 등의 ADR 교육프로그램을 조사 검토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중재관련기관의 ADR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ADR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강빈(2006)의 영국,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외국의 중재관련기관의 중재인 연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중재인 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논문이 있는바,[1]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상기 선행연구가 연구범위를 ADR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중재인 연수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중재인뿐 만 아니라 알선인 또는 조정인 교육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Ⅱ. 우리나라의 ADR사건 현황

1. 중재사건 현황

2007년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중재 261건, 국제중재 59건, 총 320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중재신청 금액은 국내중재 1억3천4백만불, 국제중재 8천2백만불, 총 2억1천6백만불로서 전년대비 53% 증가를 나타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국내상거래 77건, 건설 144건, 무역 56건, 해사 11건, 부동산 9건, 기술·정보통신 등 2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재사건이 증가한 분야는 건설분야가 전년대비 157% 증가, 무역분야가 56% 증가, 기술·정보통신 등 분야가 28% 증가를 보였고, 중재사건이 감소한 분야는 부동산분야가 전년대비 36% 감소, 해사분야가 39% 감소를 보였다.

중재사건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대금결제 209건, 품질불량 19건, 계약조건 해석 56건, 선적·납기 불이행 20건, 운송 4건, 원인미상 및 기타 16건, 지적재산권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인별 접수가 증가한 분야는 계약조건해석 원인이 전년대비 167% 증가, 지적재산권 원인이 150% 증가, 대금결제 원인이 62% 증가, 선적 및 납기불이행 원인이

1) 이강빈, "우리나라 중재기관의 중재인 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006년도 전체중재인 포럼 발표논문집」, 대한상사중재원, 2006. 9. 22, pp.3-32.

25% 증가를 보였고, 원인별 접수가 감소한 분야는, 운송 원인이 전년대비 67% 감소, 원인미상 및 기타 원인이 50% 감소를 보였다.[2)]

〈표 1〉 2007년도 중재사건 현황

(단위 : 건, 미화 백만불, %)

기간, 건수, 금액 / 구분	2007년		2006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261	134	168	108	55	24
국제	59	82	47	33	26	145
총계	320	216	215	141	49	53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2007년 클레임통계", http://www.kcab.or.kr, 15 January 2008.

2. 알선사건 현황

2007년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사건 접수건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알선 337건, 국제알선 215건, 총 552건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고, 알선신청 금액은 국내알선 1천1백만불, 국제알선 1천8백만불, 총 2천9백만불로서 전년대비 9% 감소를 나타냈다.

알선사건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대금결제 155건, 계약조건 해석 143건, 품질불량 108건, 선적 및 납기불이행 93건, 운송 29건, 원인미상 및 기타 13건, 수량부족 8건, 포장불량 1건, 지적재산권 1건, 미구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인별 접수가 증가한 분야는 계약조건 해석 원인이 전년대비 35% 증가, 품질불량 원인이 21% 증가를 보였고, 원인별 접수가 감소한 분야는 수량부족 원인이 전년대비 38% 감소, 원인미상 및 기타 원인이 28% 감소, 운송 원인이 15% 감소, 대금결제 원인이 14% 감소를 보였다.[3)]

2) 대한상사중재원, "2007년 클레임 통계", http://www.kcab.or.kr, 15 January 2008.
3) 대한상사중재원, "2007년 클레임 통계", http://www.kcab.or.kr, 15 January 2008.

〈표 2〉 2007년도 알선사건 현황

(단위 : 건, 미화 백만불, %)

기간, 건수, 금액 / 구분	2007년		2006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337	11	276	17	22	-38
국제	215	18	258	15	-17	25
총계	552	29	534	32	3	-9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2007년 클레임통계", http://www.kcab.or.kr, 15 January 2008.

3. 중재인 현황

2007년 12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수는 국내거주인 895명, 해외거주인 83명, 총 978명이며, 업종별 중재인 현황을 보면, 법조계 334명, 실업계 272명, 학계 238명, 공공단체 및 기타 100명,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3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

Ⅲ. 조정인 (알선인) 및 중재인의 자격제도

1. 중재법 및 중재규칙상의 중재인 자격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특정한 거래나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거나 상업적으로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5] 그러나 그 제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요 입법례들이 중재인의 형식적 자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고,[6] 변호사 기타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7]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인의 자격으로서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http://www.kcab.or.kr, 15 January 2008.
5) Andrew Tweeddale and Keren Tweeddale,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645.
6)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1조 제1항, 한국 중재법 제12조 제1항.
7)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00, p.103.

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면으로 그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인이 될 수 있다.[8]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위촉기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명부 정비규정[9]에 의하면 중재인은 대외적 신망이 높고 중재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일반중재인의 분야별 위촉기준을 보면[10], ① 법조계 :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학박사·외국인 변호사 자격취득자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② 실업계 :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학계 :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 ④ 공공·기타 전문단체 : 해당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⑤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⑥ 주한 외국인 : 외국 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⑦ 국외거주자 : 위의 ①항 내지 ⑤항에 준한다.

소액사건 중재인의 위촉기준을 보면,[11] 중재원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전·현직 임원인 자 중에서 중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영국공인중재인협회의 회원 등급 및 자격기준

영국공인중재인협회(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b)의 회원등급은 준회원(Associate), 회원(Member), 상급회원(Fellow)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의 자격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Associate)

준회원 등급은 분쟁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법적 자격이나 실무경험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준회원으로서 최저자격 기준은 신청인이 ① 협회의 초보평가 중 하

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9조.
9) 중재인명부 정비규정은 대한상사중재원 정관 제8장 및 중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명부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1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명부 정비규정 제3조 제1항 1호.
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명부 정비규정 제3조 제1항 2호.

나에 합격하거나, ② 동등하게 승인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③ 실무경험을 통하여 필요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 신청서에 그러한 취지의 관련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12]

(2) 회원 (Member)

회원 등급은 분쟁해결 개업자로서 학위수준의 법적 자격과 적당한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회원으로서 최저자격 기준은 신청인이 ① 협회의 제2부(Part II) 시험의 단위(Module) 1 및 2에 합격하거나, ② 협회의 알선인 자격인정평가에 합격하거나, ③ 동등하게 승인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13]

(3) 상급회원 (Fellow)

상급회원 등급은 최고수준의 회원이며, 협회 상급회원 자격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험있는 개업자들에게만 부여된다. 상급회원으로서 최저 자격기준은 신청인이 ① 협회의 제3부(Part III) 시험의 단위(Module) 1 및 2에 합격하거나, ② 국제알선졸업증 과정을 이수하거나, ③ 동등하게 승인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④ 수시로 협회의 웹사이트에 통지된 "상급회원으로의 저명인들 경로"(The Eminent Persons Route to Fellowship)를 위해 승인된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⑤ 수시로 협회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바와 같이 협회의 승인된 절차에 따라 동등자 면접(Peer Interview)에 합격하여야 한다.[14]

3. 미국중재협회의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 회원자격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는 법률 및 상업사회에서 가장 소양이 있고 존경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지난 수년간 지역패널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현재 매우 작은 그리고 더욱 정선한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는 본 협회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중립자(Neutrals: 중재인 및 알선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로서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상의 개방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담당건수의 필요와 이용자의 선호에 근거하고 있다. 비록 강력한 자격 인정물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조차 항상 등록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관리기술, 실질적 전문지식, 서약, 윤리, 연수 및 지역 담당건수에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철저하고 이중적인 과정을 이용하여 선정되고 있다. 본 협회의 중립자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현저한 학구

12)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Membership Regulations 16.1.
13)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Membership Regulations 16.2.
14)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Membership Regulations 16.3.

적 및 전문적 직업의 명성을 달성하였음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명부상 회원의 업적은 전진조건으로 감시되며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에 등재된 중재인들 가운데 약 70%는 일반중재인, 약 30%는 LCCP(Large Complex Case Panel: 대형 복잡사건 패널)중재인으로 구분된다. LCCP 중재인은 중재 경험이 풍부하고 사건 해결능력이 뛰어난 중재인으로서 AAA의 비정기적 비공식회의에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크고 복잡한 중재사건을 배정하고 있다.

전국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상의 회원자격을 위한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15]

(1) 자격

신청자는 ① 최소 10년간 원로수준의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경험 또는 법률실무, ② 신청자의 전문지식의 분야에 적합한 교육학위 또는 전문직업 면허, ③ 신청자의 분야에서 지도력을 나타내는 명성, 수상 및 표창, ④ 중재 및 다른 분쟁해결방식에서 연수 및 경험, ⑤ 전문직업협회의 회원자격, ⑥ 기타 관련 경험 또는 업적(예를 들면, 출판된 논문) 등이 있어야 한다.

(2) 중립성

신청자는 ① 선입관 및 편견으로부터 자유, ② 법률, 사업 또는 거래의 원칙들을 평가하고 적용하기 위한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3) 사법능력

신청자는 ① 심리과정을 관리할 능력, ② 증언 및 다른 증거의 철저하고 공평한 평가를 할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4) 명성

신청자는 ① 동료들에 의하여 성실, 공정 및 훌륭한 판단에 대하여 최고 존중을 받았을 것 ② AAA 중재인 윤리규약 및 알선인 행동표준을 지지하는 것에 헌신하여야 한다.

(5) ADR 과정에의 서약

신청자는 ①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선정되었을 때 시간과 노력을 바칠 의지, ② AAA의 노력을 지원할 의지, ③ 상사중재 개발 프로그램의 지침 하에 연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15)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http://www.adr.org, 30 December 2007.

의지 등이 있어야 한다.

(6) 추천서

신청자는 AAA로부터 추천서 제출이 요구되는 때에, 신청자의 분야에서 적어도 3인의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부터, 그러나 신청자가 고용되거나 신청자가 공무원, 관리자 또는 수탁자로서 근무하는 회사 또는 협회 밖으로 부터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추천서에는 ① 관계의 성질 및 기간, ② 신청자가 임무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 등을 언급하여야 한다.

추천서를 위하여 권장되는 출처로는 ① 현재 AAA 패널 회원, ② 현재 또는 종전 주(State) 또는 연방 판사(변호사인 신청자를 위하여 제안됨), ③ 신청자의 상대 법률고문으로서 임무를 맡았던 변호사(변호사인 신청자를 위하여 제안됨), ④ 종전의 고용주 또는 고객 등이다.

(7) 개인서신

신청자가 AAA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에 포함되고자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신에는 신청자 자신이 협회에 봉사하고 대표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한 신청자의 의지의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현재 어느 다른 ADR기관에 중립자(Neutral)인가 아닌가를 서신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일본중재인협회의 회원 등급 및 중재인 검정제도

일본중재인협회는 중재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재인으로서의 직무를 맡는 데에 충분한 지식에 대하여 검정하는 "중재인 검정제도"를 본 협회의 제도로서 창설하여 2006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재인 검정제도는 일본중재인협회의 회원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 더욱이 중재인 검정제도는 국가 자격 등의 법적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 협회의 사적인 제도이다.

중재인 검정은 일본중재인협회의 회원을 특정회원(Special Associate), 보통회원(Ordinary Associate), 상급회원(Fellow) 등 3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들 각각의 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회원: 법률이외의 특정의 전문 분야를 가지는 회원이고, 그 전문분야에 관한 국내 및 국제중재에 대하여 단독중재인 또는 제3중재인으로서가 아니고, 상급회원 또는 상급회원과 동일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자와 함께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회원이다. ② 보통회원: 국내 및 국제중재에 대하여 단

16)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2조 제1항.

독중재인 또는 제3중재인으로서가 아니고, 상급회원 또는 상급회원과 동일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자와 함께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회원이다. ③ 상급회원: 국내 및 국제중재에 대하여 단독 또는 제3중재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회원이다.[17]

중재인 검정의 방법은 일본중재인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는 "검정위원회"가 검정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면담 후, 검정을 실시한다. 즉 ① 일본중재인협회의 회원일 것, ② 중재인 연수과정이 정하는 단위(학점)의 취득에 대해서는 적당히 실시하는 확인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③ 중재인협회가 별도 정하는 윤리규칙의 준수를 서약하는 것, ④ 검정료의 납부 등이다.[18]

중재인 검정에 합격한 자는 일본중재인협회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본 협회의 회원명부에 중재인 검정규칙이 정하는 회원구분을 부기한다.[19] 검정위원회는 6명의 검정위원으로 조직하며, 검정위원은 학식 경험을 가지는 자 및 변호사로서 본 협회 이사장이 임명한다.[20]

일본중재인협회는 중재인 검정 실시에 관하여 "중재인 검정규칙"(총 10개 조문 및 부칙)을 2004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중재인 검정, 중재인검정위원회, 중재인 연수과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Ⅳ. 주요 중재관련기관의 ADR 교육프로그램

1.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중재인협회의 ADR 교육프로그램

(1) 대한상사중재원의 ADR 교육프로그램[21]

1) 중재 CEO 아카데미 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중재전문 최고경영자과정으로서 국제중재의 활성화 및 중재인의 저변확대와 분야별 중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수강기간은 15주로서 매주 1회 강의한다.

이 과정의 내용은 모듈 I: ADR과 중재일반, 모듈 II: 중재법규와 중재사례 해설 및 분석, 모듈 III: 혁신투자기법, 모듈 IV: 특별과정(건강관리특강, 문화특강,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자격은 상장기업·무역업체 등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국회·사법부의 고위공직

17)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2조 제2항.
18)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3조~제5조.
19)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6조 제1항.
20)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9조 제2항.
21) 대한상사중재원, "교육/세미나", http://www.kcab.or.kr, 30 December 2007.

자, 정부유관기관·국영기업 및 금융기관의 임원, 전문직종 CEO, 각계 전문가, 변호사, 중재인, 교수 등이다.

2)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건설업체들이 점차 복잡 다난해지는 건설분쟁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수강기간은 3일간이다.

이 과정의 내용은 건설클레임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 건설분쟁, PQ심사 및 적격기준, 건축하자 담보책임,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전문재판장과의 대화, 건설분쟁해결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의 참가대상은 건설업체의 법무 및 공무담당 임원 및 실무자, 건설전문변호사 등이다.

3) 분쟁예방 강좌

이 강좌의 목적은 업계의 서업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연중 수시로 업계의 신청 시에 강사를 회사로 파견하여 실시한다.

이 강좌의 내용은 해당분야에 대한 클레임 사례분석,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클레임 해결 및 관리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좌의 대상은 건설, 무역, 금융, 지적재산권, 부동산, 인테리어, 보험, 보증 등을 포함한 국내외상거래 제반분야이다.

(2) 대한중재인협회의 ADR 연수프로그램[22]

1) 전문중재인 포럼

대한중재인협회의 회원인 중재인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역금융포럼, 해사보험포럼, 건설포럼, 저적재산권 포럼 등 4개 전문분야별 포럼을 개최하여 해당분야의 중재실무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포럼의 참가대상은 해당 전문분야의 중재인 회원들이다.

2) 중재인 연수 기획사업

대한중재인협회의 회원인 중재인들을 대상으로 중재판정문 작성실무, 중재절차 진행 및 판정부 회의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22) 대한중재인협회, "2008년도 사업계획서", 2008. 1.

3) 신규중재인 교육

대한중재인협회의 회원인 신규중재인들을 대상으로 중재실무 및 판정부 회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영국공인중재인협회의 ADR 교육프로그램

(1) 알선 교육 과정[23]

1) 알선입문 (Introduction to Mediation)

이 과정은 1일 과정으로서 상사알선의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ADR과정 즉 상사알선과 중재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는 ① 상사알선에 관하여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는 자, ② 개업알선인이 되기 위하여 추가로 공부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얻은 지식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자, ③ 공인중재인협회의 준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등이다.

과정내용은 다른 분쟁해결절차들과의 비교, 알선과 법률, 협상, 알선절차, 알선원칙 등이다. 과정평가는 과정 후 과제에 의하여 하며, 평가결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참가자에게 준회원 급으로 공인중재인협회의 가입신청을 허용한다.

2) 알선훈련과정 (Mediation Training Course)

이 과정은 참가자들이 복잡한 다수 당사자 및 매우 감정적인 사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알선을 하는데 유능하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학습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공인된 알선인 지위를 성취하는데 참가자의 성공의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알선인 훈련의 제1일 내지 3일과 제4일 및 제5일은 연속적인 주일에 행해지며 그 후 즉시 선택적 평가가 따른다. 별도의 완전 독립적인 평가단이 과정 완료시 성취한 기술 및 능력의 수준과 공인된 알선인 지위의 성취 여부를 결정한다.

참가자는 ① 공인된 상사알선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 ② 알선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기를 원하는 자, ③ 참가자의 현재 직업에서 알선 기술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 등이다.

과정내용은 알선의 5단계, 감동을 가지고 일하기, 기법 질문하기, 친밀한 관계 구축하기, 기간제한 알선, 다수 당사자 및 다수문제 사건들, 공동알선 및 지원, 해결합의, 알선에서 평가, 윤리 및 규범 등이다. 평가결과는 5일간의 알선 훈련과정에 참가자에게 중재인협회의 준회원이 되기 위한 지원을 허용한다. 2일간의 알선인 훈련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자에게 공인된 알선인 지위를 부여하며, 공인중재인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지원을 허용한다.

23)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ourse Directory*, http://www.arbitrators.org, 30 December 2007.

3) 국제상사알선 대학원 졸업증 (Post-Graduate 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ADR)) (국제중재대학원과 제휴)

국제상사알선(ADR) 졸업증(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과정은 알선과 조정에 강한 초점을 가지고 국제 ADR의 대학원 졸업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이 졸업증 과정은 국제알선에 관련되는 이론적, 실무적 및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 ADR에 관련되는 더 많은 전문직업인들에게 디딤돌을 제공한다.

졸업증이 수여된 학생들은 공인중재인협회의 상급회원 학문적 요건이 면제되며 상급회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오직 동등자 면접(Peer Interview)을 받을 것만이 요구된다.

(2) 중재 교육과정[24]

1) 중재 입문 (Introduction to Arbitration)

이 과정은 1일 과정으로서 상사중재의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ADR 과정 즉 중재, 알선 및 조정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는 ① 중재와 이용자들에 대한 그것의 이점들에 관하여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는 자, ② 공인중재인이 되기 위하여 추가로 공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자, ③ 공인중재인협회의 준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 등이다. 과정내용은 분쟁해결절차의 비교, 1996년 중재법, 중재인의 권한 및 관할, 사건의 진술, 예비회의, 비용 및 이자, 심리절차, 판정의 요소 등이다. 평가결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참가자에게 준회원 급으로 공인중재인협회의 가입신청을 허용한다.

2) 국제중재 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 과정은 1일 과정으로서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ADR과정 즉 중재, 알선 및 조정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는 ① 국제중재와 이용자들에 대한 그것의 이점들에 관하여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는 자, ② 공인중재인협회의 준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 ③ 공인중재인협회의 상급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 등이다. 과정내용은 분쟁해결절차의 비교, UNCITRAL 모델중재법의 본질적 특징, 법률 및 규칙, 중재판정부의 구성·권한 및 관할, 신청 및 답변의 진술, 절차의 조직, 비용 및 이자, 심리, 중재판정, 초안작성 및 집행, 중재조항의 초안작성 연습 등이다. 평가결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참가자에게 준회원 급으로 공인중재인협회의 가입신청을 허용한다.

24)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ourses Directory*, http://www.arbitrators.org, 30 December 2007.

3) 국제상사중재 졸업증 (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 과정은 국제중재법, 실무 및 절차를 다루는 강의, 개인지도 및 토론 워크샵의 9일로 구성되며, 국제상사중재의 실무 및 절차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참가자는 ① 개업변호사 그리고 법적 추론 및 개념에 익숙하고 (국내 또는 국제)중재에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증대시키기를 원하는 기타 전문가, ② 국내 중재실무의 경험이 있으며 국제중재절차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공인중재인협회의 상급회원(Fellow) 등이다. 과정내용은 중재의 성질 및 한계 그리고 다양한 법제도에 의한 그것의 취급, UNCITRAL 모델법 및 국내중재법, 중재적격성, 국제상사중재에서 적용법률, 사생활·성실·기밀성 및 성실성, 중재인의 관할·권한 및 의무, 기관 및 임의중재, 집행가능성의 주요특징 등이다. 평가결과는 다음 2개 시험 즉 ① 국제중재실무 절차(졸업증 시험) ② 판정문 작성시험(이미 상급회원(Fellow)자격을 위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 시험은 면제됨)에 합격한 경우 국제상사중재졸업증(DipICArb)을 수여한다.

4) 단위 1-의무 및 민사증거 법률 (Module 1-Law of Obligations & Civil Evidence)

이 단위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및 증거법 등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단위의 목적은 비법률가, 공인중재인협회 준회원이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계약, 불법행위 및 증거법률의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위는 가정학습과 대면지도를 혼합하여 6개월 기간이상 제공된다. 이 단위의 참가자는 계약부분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공인중재인협회의 준회원이어야 하고 위의 제공된 순서에 따라서 각 부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공인중재인협회 제2A부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 단위 대신 특별변이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단위 2-중재법률 (Module 2-Law of Arbitration)

이 단위의 목적은 중재에 전문화하기를 원하는 협회의 준회원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중재법의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위는 원격수강과 대면지도를 혼합하여 6개월 기간이상 제공된다. 이 단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준회원이어야 하며, 그리고 대학수준에서 단위1-계약·불법행위 및 증거법률 또는 사전에 제3A부로 알려진 공인중재인협회 시험 또는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되었어야 한다.

6) 단위 3-중재실무, 절차 및 초안작성 (Module 3-Practice, Procedure and Drafting)

이 단위의 목적은 확신을 가지고 절차에 관한 독립적인 조언의 제공을 허락하기 위하

여 중재에서 주요한 절차적 요소들의 충분한 지식과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위는 가정학습과 대면지도를 혼합하여 4개월 기간이상 제공된다. 이 단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그리고 대학수준에서 단위 1-계약·불법행위 및 증거법률 또는 사전에 제3A부로 알려진 공인중재인협회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되었어야 하며, 그리고 단위 2- 중재법률 또는 사전에 제2B부로 알려진 공인중재인협회 시험에 협격하였어야 한다.

7) 단위 4-판정문 작성 (Module 4-Award Writing)

이 단위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이유가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중재판정문 작성의 충분한 지식과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위는 가정학습과 대면지도를 혼합하여 3개월 기간이상 제공된다, 이 단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그리고 대학수준에서 단위 1- 계약·불법행위 및 증거법률 또는 사전에 제3A부로서 알려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되었어야 하며, 그리고 단위 2-중재법 또는 사전에 제2B부로 알려진 시험 및 단위 3-중재실무 및 절차 또는 사전에 제3B부(시험지와 함께)로서 알려진 공인중재인협회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신속경로평가(Fast Track Assessment)에 합격하였어야 한다.

8) 국제상사중재 대학원 졸업증 (Post-Graduate 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중재대학원과 제휴)

국제상사중재 졸업증(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과정은 국제상사중재의 규칙 및 절차에 철저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국가법률, UNCITRAL 중재규칙 및 국제중재에 관한 주요 국제법률문서 및 기관규칙에 관하여 비교방법으로 가르친다. 국제상사중재 법률 및 실무의 상세한 취급이 학생들에게 초기단계에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국제계약의 80% 이상에서 우선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통찰을 허락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3. 미국중재협회의 ADR 교육프로그램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한 인터넷에 의하여 송달되는 고문 및 중립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중재 및 알선옹호, 기초 및 상급 알선기술, 충돌관리 및 협상기술로부터 단체협상 및 불만취급에 이르는 주제들을 포함하는 전일 및 다수일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ADR 개업자에 의해 고안된 이들 프로그램은 협회의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된다.

(1) 개인적 연수 (In-person Training)[25]

미국중재협회 본인 연수프로그램은 단체 및 개인들이 때때로 그들의 사업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ADR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과정자료와 연습의 주문 맞춤은 참가자들이 직접 작업환경에 이전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얻는 것을 보장한다. 개인적 과정은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 밖에서 제공될 수 있다. 사업장 밖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미국중재협회는 재판외분쟁해결의 특수영역에 그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미국중재협회의 지부를 통하여 개방등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온라인 연수 (Online Training)[26]

미국중재협회는 그의 중립자 뿐 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편리한 인터넷 기반 교육프로그램에의 접속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온라인 과정들은 스스로 결정되며, 그들이 이용자의 속도에 따라 취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중재협회 중립자인 경우 온라인 연수에 접속하기 위해 현존하는 로그인 ID와 Password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 시에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전국 중립자명부(National Roster of Neutrals)상 회원들은 온라인 교육과정에 접속하여 중재인 연수 및 개발과정(Arbitrator Training & Development)에 등록하면 이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대중은 이용할 수 없으며, 본 협회의 전국 중립자명부상 회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중재인 연수 및 개발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중재패널 (Arbitration Panel)의 사회: 절차관리, 진행 및 활력 (ACE 005)

이 과정은 중재패널의 사회에서 유일한 문제들을 눈에 띄게 하고 최상의 실무에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이 과정의 마지막에 임하여 중재인은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투명한 분쟁해결 경험을 제공하는 태도로 3인의 AAA 중재패널을 사회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AAA 중재에서 지연 전술의 취급 (ACE 004)

이 과정은 중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아마도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술을 포함하거

25)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University In-person Training*, http://www.adr.org, 30 December 2007.
26)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University Online Training*, http://www.adr.org, 30 December, 2007.

나 회피하기 위하여 중재진행 관리의 중요성을 다룬다. 당사자들이 고의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중재사건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술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재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이 과정은 다른 형태의 지연 전술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토의한다. 이 과정은 AAA 상사, 건설 및 고용 중재인들을 위한 것이며, AAA 노동중재인들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3) AAA 중재인 윤리 및 고지 (ACE 003)

이 과정은 3가지 목적 즉 (i) AAA의 후원 하에 사건들을 맡아 하는 때에 적용되는 중재인의 윤리적 의무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 (ii) 중재인의 고지범위에 관한 AAA의 철학을 전달하는 것, (iii) 중재인이 배정받은 사건들에 관련된 모든 관계 및 이익들을 고지할 중재인의 의무를 적절하게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 과정은 다음주제 즉 윤리와 중재인,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고지 시나리오 및 학습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은 AAA 상사, 건설 및 고용 중재인들을 위한 것이며, AAA 노동중재인들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4) AAA Pro Se: 자기대표 당사자들 관련 사건들의 관리 (ACE 002)

이 과정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고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윤리적 및 절차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재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이 과정은 자기대표 당사자들 관련 사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할 많은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중재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AAA 상사, 건설 및 고용 중재인들을 위한 것이며, AAA 노동중재인들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5) AAA 중재판정: 보호, 결정 및 판정문 작성 (ACE 001)

이 과정은 이해력 있고,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중재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이 과정은 다음 주제들을 취급하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예비심리를 실행하는 때에 판정을 보호하는 것과 판정 심의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 증거심리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때에 판정을 보호하는 것과 판정 심의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 판정을 결정하는 것, 판정문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최종판정을 내리고 판정이후 문제들을 다루는 것 등이다. 이 과정은 AAA 상사, 건설 및 고용 중재인을 위한 것이며, AAA 노동중재인들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6) AAA 노동중재인 I

이 과정은 모든 신규 노동중재인들을 위한 강제적 연수요건이다. 상사, 건설 및 고용 중재인들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연간 연속 교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의 초점은 AAA가 노동중재를 관리하는 방법 및 AAA의 후원 하에 복무하는 노동중재인들이 AAA의 관리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의 포괄적인 이해를 신규 AAA 노동중재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7) 효과적인 알선변호의 기본

이 과정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선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제공하고, 유능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선에서 한 당사자를 대리하는 방법을 위한 훈련과 "최선의 연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과정의 마지막에 참가자는 알선의 이용을 통하여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취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이과정은 9부로 분류되며 완료하는데 약 2시간 반이 걸린다.

4. 일본중재인협회의 ADR 연수프로그램

(1) 조정인 양성강좌

1) 조정인 양성강좌 기초편[27]

이 강좌는 일본중재인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위탁을 받아 조정인교재작성위원회가 작성한 교과과정·교재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실시해 왔다. 이 과정의 목적은 조정인 후보자의 활동범위를 되도록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이 있는 조정인 후보자를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조정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말하자면 평가형 조정과 함께 자주교섭원조형 조정이 채택되어 그로 인하여 필수가 되는 기술이나 그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 기반을 소개하고 있다.

수강생은 상공회의소 상담원·지도원 및 기업OB매칭(matching)협의회의 등록자 등이 중심이었다. 조정인 양성 기초강좌의 프로그램은 3일간 3회 실시되며, 각 주제 및 내용은 ① 조정의 이미지 파악(소개, 사양을 없애기·목표의식 확인, ADR 일반지식, 조정지식, 이미지 파악, 교섭의 실연, 교섭이론), ② 조정에 있어서 기술을 체험하여 배우기(첫 만남, 조정에 있어서 듣기, 듣기훈련, 듣기강의, 기법연습), ③ 조정의 다양성 고려(당사자로부터 어려운 질문, 윤리문제, 조정역할실행(role pla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7) 日本仲裁人協會, 「JCA ジヤーナル」, 2005. 3, p.71.

2) 조정인 양성강좌 중급편[28]

2007년 4월에 일본 ADR 이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ADR에 있어서 조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조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국민일반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우수한 조정인의 존재가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중재인협회는 주로 ADR에 있어서 조정에 관련되는 조정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정인 양성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에 「조정인 양성교재(기초편) 2004년판」을 사용하여 조정인 양성강좌·기초편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그의 후속편으로서 조정인 양성강좌·중급편(전6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좌는 일본중재인협회 연수부 소속회원이 참가하여 작성한 「조정인 양성교재(중급편) 2006년판」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이 교재는 기초편과 마찬가지로 주로 중소기업간 및 노동자와의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률실무가가 아닌 자(예를 들면 기업인 OB 등)가 필요에 따라서 법률실무가의 원조를 받으면서 조정을 할 때에, 수속실시자로서 최저한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기법으로는 법적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주교섭원조형(Factilitative Mediation: 촉진형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급편은 기초편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강좌는 일본중재인협회에서 2006년 개최한 조정인 양성강좌·기초편을 수강한 자 및 다른 단체가 「조정인 양성교재(기초편)」을 이용하여 개최한 조정인 양성강좌를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도 조정인 양성강좌·중급편의 프로그램은 6일간 6회 실시되었으며, 각 주제 및 내용은 ① 조정의 대비(목적: 조정의 전제가 되는 교섭이론을 학습, 내용: 중급편의 도입, 교섭역할실행), ② 조정의 진행(목적: 과제특정과 선택항목 창조의 단계를 학습, 내용: 과제(이슈)의 특정선택항목의 개발), ③ 조정의 확대(목적: 조정 진행의 폭을 확대하는 수법을 학습, 내용: 어려운 국면, 간부회 공동조정), ④ 조정의 마무리(목적: 조정의 최종단계의 합의문서 작성 등을 학습, 내용: 윤리, 법률가와의 제휴, 합의문서), ⑤ 총정리(목적: 지금까지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역할 실행을 행함, 내용: 복습(기초편·중급편의 지식의 확인, 역할실행), ⑥ 당신이 조정인(목적: 조정역할 실행을 통하여 기술전체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연결, 내용: 역할실행, 좌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중재인 실무연수강좌[29]

이 강좌는 일본중재인협회가 2006년부터 실시하는 중재인검정제도의 보통회원의 수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강좌의 종료 후에 행하는 구술시험에 합격하면

28) 日本仲裁人協會, 「JCA ジヤーナル」, 2007. 9, pp.62~63.
29) 日本仲裁人協會, "仲裁人 研修講座 のご 案內", http://www.arbitrators.jp, 16 March 2007.

일본중재인협회의 보통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보통회원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있어서 배석중재인으로서 필요한 중재절차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일본중재인협회가 인정한 회원에 대하여 부여되는 일본중재인협회의 자격이다. 이 강좌를 수강한 자는 검정시험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의 실무 특히 중재사건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강좌이다.

강좌수료(단위취득)는 매 강좌 종료 시 10문~20문의 확인시험을 받아야 단위를 취득한다. 결석한 강좌에 대하여는 테이프를 1주간 대출하여 그 후 확인시험을 받아 합격하면 단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전 단위를 취득한 경우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이 된다.

강좌 프로그램은 10일간 10회 실시하며, 각 주제 및 내용은 ① 재판외분쟁해결수단(ADR)(내용: 각종 ADR, ADR의 특징, 중재 등), ② 중재인의 수임까지(내용: 중재인을 구하기 위한 조건·자격·소질 등, 중재인의 윤리·의무, 공정·독립성·비밀보지의무), ③ 수임부터 심리전까지(내용: 중재인의 선임수속(기피수속을 포함), 중재인으로서 확인할 사항, 심리에 관한 준비-준비수속을 포함), ④ 심리수속(내용: 중재수속의 준칙,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를 수령한 중재인의 해야 할 일, 제1회 심리기일 또는 당사자와의 사전타협기일, 이후 심리기일, 증거조사), ⑤ 쟁점정리와 사실조사(내용: 쟁점정리, 사실인정(증거의 평가)), ⑥ 중간수속(내용: 관할에 관한 다툼 기타 중간수속에 관한 판단·결정, 보전수속(잠정조치·보전조치), 재판소의 보전명령, 중간수속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⑦ 중재판정(내용: 중재판정의 종류, 중재판정에 있어서 부여하는 구제, 중재판정서의 작성과 송부, 중재판정의 정정,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판정의 해석, 추가 중재판정, 화해), ⑧ 중재수속의 종료 후의 문제(내용: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 뉴욕조약), ⑨ 국제상사중재(내용: 국제상사중재의 특징-국내중재와의 상이점, UNCITRAL 중재모델법과 중재규칙의 개정 국제상사중재의 실무상의 문제점, 준거법과 준거규범-중재에 있어서 CISG의 적용(실체준거법과 수속준거법의 차이), ⑩ 모의중재-비디오 감상과 논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Ⅴ. ADR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중재인 검정제도 실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수는 2007년12월 현재 총 978명으로 중재인 구성현황은 법조계 334명, 실업계 272명, 학계 238명, 공공단체 및 기타 100명,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34명 등이다. 그러나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 정비규정에 따라 매년 5월말에 임기(3년) 만료된 중재인을 재위촉하거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신규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다.[30]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명부 정비규정에 의하면, 중재인은 대외적 신망이 높고 중재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각 분야 즉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기타 전문단체,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주한 외국인, 국외거주자별로 위촉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일반중재인으로 위촉한다.[31]

여기서 상사중재기관의 신규중재인 위촉 시에 대한중재인협회 소정의 신규중재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접을 거쳐 중재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자를 중재인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사중재인의 중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서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대한중재인협회의 회원인 중재인들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여 연수 및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협회 회원인 중재인들의 구분은 위에서 설명한 영국공인중재인협회 또는 일본중재인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바를 모델로 하여 예를 들면, 특별회원, 일반회원, 상급회원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회원으로서 일정한 검정방법에 합격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구분을 본 협회 회원명부에 부기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2] 이러한 중재인 검정제도는 대한중재인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이를 위하여 본 협회 내에 법조계, 학계 및 실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중재인 검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회원구분의 기준은 ① 특별회원(Special Member) : 법조계 이외의 전문분야 (실업계, 학계, 공공·기타 전문단체, 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의 회원으로서 전문분야에 관한 국내 및 국제중재에 있어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서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원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회원, ② 일반회원(General Member) : 국내 및 국제중재에 있어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서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원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회원, ③ 상급회원(Fellow) : 국내 및 국제중재에 있어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회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중재인 검정위원회의 조직은 법조계 2인, 학계 2인, 실업계 2인 상사중재기관 1인 등 총 7인의 검정위원으로 하되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자격은 각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중재전문가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검정위원회 위원장은 검정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3]

---

3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명부 정비규정 제5조 제1항.
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명부 정비규정 제3조 제1항.
32)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 검정규칙 제2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1항 참조.

2. ADR 연수 및 검정 전담부서 설치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에는 ADR 연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ADR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영국공인중재인협회 교육 및 연수과정부(Education Training Course), 미국중재협회 교육서비스부(Education Services Department), 일본중재인협회 연수부 등과 같은 ADR 연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재인 검정 업무도 연수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ADR 연수 및 중재인 검정 전담부서는 상사중재기관에 설치하는 것 보다 중재인협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ADR 연수 및 중재인 검정 전담부서는 대한중재인협회의 조직으로 "연수부"를 설치하여 책임자와 연수 및 검정담당 직원을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4]

3. ADR 연수 정규과정 개설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ADR 교육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중재 CEO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1회 실시하였고,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을 2회, 개정신용장통일규칙(UCP600) 및 상사중재교육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다. 한편 대한중재인협회는 2007년도에 회원인 중재인들이 참가하는 무역중재인 포럼 1회, 건설중재인 포럼 3회를 개최하였으며, 신규중재인 교육 1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사중재기관 및 중재인협회의 ADR 교육 및 중재인 포럼은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ADR 연수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영국공인중재인협회, 미국중재협회 및 일본중재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ADR 연수과정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ADR제도에 적합한 ADR 연수 정규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수과정의 일정, 장소, 수강자, 강의내용, 수강료, 모집인원, 수강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강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조계, 학계 및 실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ADR 연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수강 대상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강의방법은 온라인 (On-line)강의와 오프라인 (Off-line)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3) 일본중재인검정위원회는 검정위원 6인으로 조직하며, 검정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변호사로서 본 협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검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본 협회 이사장이 임명한다(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 제9조 참조).

34)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두며,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규칙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필자의 사견으로, 조정인 연수과정의 분류, 수강자, 연수기간 및 연수강좌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① 조정인 기본 연수과정: 각종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들을 대상으로 3일 총 6시간(1일 2시간)에 3강좌(조정 및 ADR개론, 조정기법, 조정인의 권한·의무 및 윤리)를 실시한다. ② 조정인 상급연수과정: 각종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들로서 조정인 기본연수과정을 수강한 자들을 대상으로 6일 총 12시간(1일 2시간)에 6강좌(조정 준비, 조정 진행, 조정 합의문서, 조정 역할실행, 조정학습 총정리, 조정학습 좌담회)를 실시한다.

중재인 연수과정의 분류 및 수강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① 신규중재인 연수과정: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 위촉 대상자, ② 특별회원 검정 연수과정: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 검정제도상의 특별회원 검정을 받으려고 하는 회원, ③ 일반회원 검정 연수과정: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 검정제도상의 일반회원 검정을 받으려고 하는 회원, ④ 상급회원 검정 평가과정 : 대한중재인협회의 중재인 검정에 합격하여 본 협회의 회원명부에 특별회원 또는 일반회원으로 회원구분의 부기를 받은 회원 또는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중재인 연수과정별 연수기간 및 연수강좌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① 신규중재인 교육과정: 1일 총 6시간, 3강좌(중재 및 ADR개론, 중재법 및 중재규칙, 중재인의 권한·의무 및 윤리) ② 특별회원 검정 연수과정 : 8일 총 16시간(1일 2시간), 8강좌(중재 및 ADR개론, 중재법 및 중재규칙, 중재인의 권한·의무 및 윤리, 중재심리, 중재판정, 국제중재개론, 모의중재, 민법(계약법)개론) ③ 일반회원 검정 연수과정 : 7일 총 14시간(1일 2시간), 7강좌(중재 및 ADR개론, 중재법 및 중재규칙, 중재인의 권한·의무 및 윤리, 중재심리, 중재판정, 국제중재개론, 모의중재) ④ 상급회원 검정평가 과정 : 1일 총 4시간, 2개 부문 평가(중재판정문 작성, 면접)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ADR 연수위원회는 대한중재인협회 내에 두며, 조직은 법조계 2인, 학계 2인, 실업계 2인, 상사중재기관 1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하되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하며, 연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수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5]

4. ADR 연수 교재 발간 및 강사 확보

조정인 및 중재인 연수과정별로 수강자를 위한 교재를 발간하기 위하여 법조계, 학계 및 실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연수교재 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교재를 작성하

3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의 수립,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규칙 제20조 참조).

고, 또한 연수과정별로 적정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연수교재 발간위원회는 대한중재인협회 내에 두며, 조직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상사중재기관 등에서 선정한 7인의 집필위원으로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하되, 발간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6]

한편 강사는 연수과목별로 1인으로 하되 법조계, 학계, 실업계, 상사중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강좌의 전문가를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중재인 검정 및 ADR 연수 관련 규정 정비

중재인 검정 및 ADR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재인 검정규정"과 "ADR 연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되, 이를 각각 "중재인 검정위원회" 및 "ADR 연수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중재인 검정규정에는 목적, 검정의 종류, 검정기간, 검정실시기관, 검정신청방법, 검정수수료, 검정합격요건, 회원구분의 부기, 검정위원회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ADR 연수규정에는 목적, 연수과정의 종류, 연수기관, 연수참가자, 수강료, 모집인원, 수강신청방법, 강의내용, 평가방법, 강의방법, 강사선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37]

Ⅵ. 결 론

ADR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조정인 및 중재인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정인 및중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정인 및 중재인들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ADR절차를 진행하고 조정합의 및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ADR 연수과정을 수립하여 이를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은 접수된 중재사건의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중재인협회 소정의 중재인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응하여 회원명부에 회원구분이 부기된 중재인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가 해당 중재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상거래 관련 중재사건들을 보다 많이 우리나라 상사중재기관에서 취급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영국,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ADR 연

36) 일본중재인협회는 경제산업성의 위탁을 받아 일본상사중재협회와 함께 "조정인양성교재작성위원회"를 발족하여 2004년에 「조정인 양성 교재·기초편」, 2006년에 「조정인 양성 교재·중급편」을 발간하였다.

37)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검정규칙은 제1장 중재인 검정, 제2장 검정위원회, 제3장 중재인 연수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프로그램 및 중재인 검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현행 중재인 연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ADR 연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및 상사중재기관, 중재인협회 및 중재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조정인 및 중재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국제상사중재 졸업증(Diploma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과정과 같은 중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재분야의 전문인 양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바 있는 대한중재인협회가 소속회원 상사중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DR 연수제도는 향후 상사분야 이외의 각종 분야의 조정인 및 중재인들까지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정 및 중재 등 ADR제도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으로는, 우선 영국공인중재인협회, 미국중재협회 및 일본중재인협회 등의 ADR 연수부서의 운영현황 및 연수교재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구득하지 못해 이들을 소개하지 못하였고, 또한 ADR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관한 고전적 자료가 거의 발간되지 않아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조속히 상기 주요 외국 중재관련기관들의 ADR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인에 대한 국제신뢰도가 향상되고 상사중재기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상사중재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대한상사중재원, "2007년 클레임 통계", http://www.kcab.or.kr, 2008. 1.

_____, "중재인 현황", http://www.kcab.or.kr, 2007. 12.

_____, "교육/세미나", http://www.kcab.or.kr, 2007. 12.

_____, "중재인명부 정비규정", 2005. 6.

대한중재인협회, 「대한중재인협회보」 제8호, 2006. 8. 31.

_____, "2008년도 사업계획서", 2008.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규칙", 2007. 7. 27.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0.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I)」, 박영사, 2007.

이강빈, "우리나라 중재기관의 중재인 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006년도 전체 중재인

포럼 발표논문집」, 대한상사중재원, 2006. 9. 22.

日本仲裁人協會, "仲裁人研修講座のご案內", http://www.arbitrators.jp, 2007. 3.

_____, "仲裁人檢定規則", http://www.arbitrators.jp, 2007. 12.

日本商事仲裁協會, 「JCA シヤーナル」, 2005. 3, 2007. 9.

日本商事仲裁協會·日本仲裁人協會, 「調停人養成教材 中級編」, 2006.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tors and Mediators,* http://www.adr.org, 2007. 12.

_____, *AAA University In-person Training,* http://www.adr.org, 2007. 12.

_____, *AAA University Online Training,* http://www.adr.org, 2007. 12.

Tweeddale, Andrew and Tweeddale, Keren,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Introduction to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2003.

_____, *Introduction to Arbitration*, 2005.

_____, *Arbitration*, Volume 73 Number 2, May 2007.

_____, *Membership Regulations*, http://www.arbitrators.org, 2007. 12.

_____, *Course Directory,* http://www.arbitrators.org, 2007. 12.

ABSTRACT

The Effici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Kang-Bin Lee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ADR in Korea, the qualifications of mediator (or conciliator) and arbitrator, the ADR education program of major foreign arbitr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 of ADR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In 2007,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numbered 320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was US$ 216 millions. Medi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CAB numbered 552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US$ 29millions. As of December 2007, the total numbers of arbitrators on the KCAB Panel of Arbitrators was 978.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KCAB has the consolidation regulation of the Panel of Arbitrator of which purpose is to regulate the criteria and procedure regarding the drawing up and maintenance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criteria and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associate, member and fellow.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a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official authorization regulation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special associate, ordinary associate and fellow.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mediation courses and arbitration courses. The American arbitrators Association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in-person training and online training.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cultivation courses of conciliator and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of arbitrator.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s of ADR edu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the execution of official authorization system of arbitrat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ivision for

training and official autho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DR regular training courses, the publication of ADR training texts and obtaining of instructors, and the consolid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official authorization of arbitrator and ADR training. In conclusion,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the KCAB and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should make further effort to provide the ADR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otential and practicing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Key Words : ADR, Mediator, Conciliator, Arbitrator, Membership grade, Qualification system, Official authorization system, Education program, Education course, Education regulation